

수원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4가단524303 판결 [계약금반환 청구의소]

전 문

원고A

피고1. B

2. C

변론 종결2024. 9. 26.

판결 선고2024. 11. 21.

주 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피고 B은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신축하는 상가주택에 관한 사업시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의 계좌에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45,000,000원(=피고 B의 계좌로 송금한 17,000,000원 + 피고 C의 계좌로 송금한 28,000,000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사업시행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계약을 해제하고 피고 B를 상대로 피고 C와 연대하여 위 계약금을 반환할 것을 구한다.

나. 판단

원고가 체결한 사업시행계약(갑 1호증)의 당사자는 수분양자인 원고와 시행자인 피고 C이다(피고 D은 사업시행계약의 당사자인 시행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원고는 사업시행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피고 C이 지정한 피고 B의 계좌에 계약금 명목으로 17,000,000원을 송금하였을 뿐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지시에 따라 제3자에게 위 금원을 모두 송금하였으므로(을가 1호증), 위 금원의 실질적인 수령 및 귀속 주체는 피고 C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사업시행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계약의 당사자도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의 실질적인 수령 및 귀속 주체도 아닌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계약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다만 피고 C에 대한 부분에 한한다).

나.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박성남

별지